##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이원욱·김영주·송갑석

김철민 · 홍익표 · 임종성

김민기 • 박광온 • 양향자

김병욱 · 송옥주 · 장경태

의원(12인)

#### 제안이유

매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비율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 노무업종 등에 종사하는실정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호종료 아동연령 및 지원정책을 보면, 그 연령이 우리보다 높아 사회적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취업 및 교육, 건강 부문에서도 지원강화를 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 거와 교육, 취업부문 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에서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보호종료 연령에 도달 할 시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보호 종 료 후 후견인 부재로 인한 보호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함(안 제16조제1항).
- 나.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연령에 달하여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 주거, 교육, 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부 문에서도 성장과 자립을 돕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8세"를 "22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을 "건강·교육·안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 등) ①              |
|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        |                   |
| 호대상아동의 연령이 <u>18세</u> 에 | <u>22세</u>        |
|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        |                   |
| 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        |                   |
|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                   |
| 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                   |
|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                   |
|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 4                 |
|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                   |
|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         |                   |
|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
|                         |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   |
|                         | 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
|                         |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

<u>3.</u>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 육·취업 등의 지원
- 2. ~ 5. (생 략)
- ② (생 략)

| <u>경우</u>              |  |
|------------------------|--|
|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  |
|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
|                        |  |
|                        |  |
|                        |  |
| 1                      |  |
| <u>건강·교육·안전</u>        |  |
|                        |  |
| 2. ~ 5. (현행과 같음)       |  |
|                        |  |